의안번호	2201361
의 뢰 인	김태년 의원
회 답 일	2024.7.8.
추계번호	24F16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적용기한 10년 연장,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,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①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, ②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, ③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1,658억원, 2035년 3조 3,095억원 등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1년간 총 30조 2,419억원(연평균 2조 7,49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개정안은 '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' 인수 대상에 반도체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향후 반도체기술 양수가액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

– 이외에 개정안은 반도체 R&D에 대한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R&D 대비 10%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'중고품'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항목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○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5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(안 제10조 제1항)	–	−20,542	−21,158	−21,793	−22,446	−23,120	−23,813
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반도체기술 관련 외국기업 추가(안 제13조의3 제3항)		추	정	곤	란		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(안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) [1)]	–	−4,821	−4,965	−5,115	−5,268	−5,427	−5,590
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및(안 제24조 제1항 제3호) [1)]	−11,658	–	–	–	–	–	–
계	−11,658	−25,362	−26,123	−26,907	−27,715	−28,546	−29,403

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(안 제10조 제1항)	−24,528	−25,264	−26,021	−26,802	−235,486	−21,408
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반도체기술 관련 외국기업 추가(안 제13조의3 제3항)		추	정	곤	란	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(안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) [1)]	−5,758	−5,931	−6,109	−6,292	−55,275	−5,528
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및(안 제24조 제1항 단서) [1)]	–	–	–	–	−11,658	−11,658
계	−30,285	−31,194	−32,130	−33,095	−302,419	−27,493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'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' 추가 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–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– (개정안) 2034년 12월 31일 ○ 반도체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R&D 공제율 대비 10%p 상향 – (반도체 R&D 공제율) 중소 50%, 중견 40%, 대 40%	
2	안 제13조의3 제3항 (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인수대상 외국법인 대상에 '반도체기술 관련 기술'을 추가	
3	안 제24조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반도체기술 관련 시설투자공제 대상에 '중고품' 추가 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–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– (개정안) 2034년 12월 31일 ○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– 2023년 투자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24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○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및 반도체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한 내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제외
2	안 제13조의3 제3항 (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)	×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–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24조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○ 반도체기술 관련 시설투자공제 대상에 '중고품'을 추가하는 내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○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5년 발생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적용기한(2024년 말)을 감안 시,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

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실적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2년 R&D 세액공제 실적를 활용하되, 국가전략기술 R&D 실적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[1] 상 2023년 잠정 실적을 활용

○ 정부가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[2]에서 전망한 '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'에 따라 향후 공제액 실적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

-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5년까지 존재하며, 이후 기간은 2025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❑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조세지출예산서[3] 및 기획재정부 답변자료[1]를 참조하여 2023년 통합투자 세액공제액(잠정치)를 기업규모·기술별로 추정

○ 산업은행의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상 기업규모별 투자계획 증감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며,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
---

1) 기획재정부, '국무위원후보자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)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', 2023. 12.
2)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,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, 2024.7.3.
3) 정부,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2023. 9.

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기획재정부 답변자료[1] 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, 향후 세액공제액이 산업은행의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–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4년까지만 존재하며, 이후 기간은 2024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
○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
❑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
❑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연장,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에 따라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❑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‘인공지능, 클라우드 컴퓨팅’ 추가하고, 반도체 R&D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대비 10%p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

○ 향후 인공지능·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R&D·투자액을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없으며, 기술분야별로 공제 실적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특정 기술에 대한 공제율 상향효과를 추계하기 어려움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❑ (제도 개요)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술별로 다음과 같음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(당기분)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- 신성장·원천기술 R&D: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0%, 중소기업 30%
- 국가전략기술 R&D: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
*'매출액 대비 R&D 비중×3(한도 10%)'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

[표 2]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	증가분	25	40	50
	당기분	최대 2[2)]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	20~30	20~30[1)]	30~40
국가전략기술		30~40	30~40	40~50

주: 1)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, 공제율 25~40% 적용함
2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'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'로 계산함

❑ (공제실적) 2022년 R&D 세액공제 실적은 총 3조 6,173억원 수준

[표 3] 기술유형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2년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	14,512	2,535	5,811	22,858
신성장·원천기술 R&D	292	324	8,176	8,791
국가전략기술 R&D	18	0.2	4,506	4,524
계	14,821	2,859	18,494	36,17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2년 및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 상 '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' 전망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○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: ('24년) 2.5%, ('25년) 3.0%

※ 2026년 이후로 2025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4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<신성장·원천기술>	2023	2024	2025	…	2034	2035
중소기업	306	311	319	…	417	429
중견기업	340	346	354	…	463	476
대기업	8,585	8,730	8,949	…	11,676	12,026
계	9,231	9,388	9,622	…	12,555	12,932

<국가전략기술>	2023	2024	2025	…	2034	2035
중소기업	32	33	33	…	44	45
중견기업	9	9	9	…	12	13
대기업	11,927	12,130	12,433	…	16,222	16,709
계	11,968	12,171	12,476	…	16,278	16,7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&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는 일반 R&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
[표 5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10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: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…	2034	2035
신성장·원천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(A)	1,342	1,382	…	1,700	1,751
	신성장·원천 공제율 기준(B)	9,911	10,208	…	12,555	12,932
	차이(B−A)	8,569	8,826	…	10,855	11,181
국가전략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(A)	878	904	…	1,112	1,145
	국가전략 공제율 기준(B)	12,850	13,236	…	16,278	16,766
	차이(B−A)	11,972	12,331	…	15,166	15,62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2조 542억원, 2035년 2조 6,8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23조 5,486억원(연평균 2조 3,54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10년 연장 (안 제10조 제1항)	−20,542	−21,158	−21,793	−22,446	−23,120	−23,813
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	−24,528	−25,264	−26,021	−26,802	−235,486	−23,549

나.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① 임시 투자 세액공제

❑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23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

○ 당기분 공제율(%): (일반) 대 1→3, 중견 5→7, 중소 10→12
(신성장·원천기술) 대 3→6, 중견 6→10, 중소 12→18

○ 증가분 공제율(%): 3→10

❑ 개정안은 현행 2023년 투자분에만 적용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투자분까지 연장하는 내용

[표 7] 임시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

(단위: %)

	기본					임시 투자 세액공제			
	당기분			증가분		당기분			증가분
	대	중견	중소			대	중견	중소	
일반	1	5	10	3		3	7	12	10
신성장 · 원천기술	3	6	12			6	10	18	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		15	15	25	10

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

❑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·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○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'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'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
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- (기본공제율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2~13%p 우대
- (추가공제율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%p 우대

[표 8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차이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❑ (공제실적) 2023년 잠정실적 기준,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은 7,500억원 수준

○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7,483억원, 중견기업 9억원, 중소기업 8억원 수준

[표 9]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: 2023년(잠정치)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	8	9	7,483	7,500

자료: 기획재정부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①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

❑ (2023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액) 조세지출예산서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

○ (일반·신성장원천기술) 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2023년 잠정치에서 국가전략기술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안분

- 기업규모별 세액비중이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규모별로 안분
- 명세서상 일반 및 신성장·원천 R&D 당기발생세액 비중(2022년 기준)을 기준으로 기술별 안분

○ (국가전략기술) 기획재정부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상 수치를 인용하여 활용

[표 10] 기술유형별 시설투자 관련 공제액 추정: 2023년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투자	3,172	783	2,789	6,744
신성장·원천기술 투자	216	177	6,146	6,538
국가전략기술 투자	8	9	7,483	7,500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 및 국세청 제출자료, 기재부 서면답변서 등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향후 투자 관련 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후,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2023~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

-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(잠정): 대 -5.3%, 중견기업 9.8%, 중소기업 5.8%
-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(전망): 대 3.0%, 중견기업 4.3%, 중소기업 6.5%

○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변화

- 당기분 세액공제율(%): (일반) 대 1→3, 중견 5→7, 중소 10→12
  (신성장·원천기술) 대 3→6, 중견 6→10, 중소 12→18
- 증가분 세액공제율(%): (일반/신성장·원천기술) 3→10
  (국가전략기술) 4→10

[표 11]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: 2025년

(단위: 억원)

		2025
현행 공제율 적용 (A)	중소기업	3,817
	중견기업	1,099
	대기업	8,715
	소계	13,631
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(B)	중소기업	5,880
	중견기업	1,973
	대기업	20,350
	소계	28,203

차이 (B-A)	중소기업	2,063
	중견기업	874
	대기업	11,635
	소계	14,57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

❑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공제액을 전망

○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2023~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

-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(잠정): 대 -5.3%, 중견기업 9.8%, 중소기업 5.8%
-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(전망): 대 3.0%, 중견기업 4.3%, 중소기업 6.5%

※ 2025년 이후로 2024년과 동일한 투자 증감률을 적용

[표 12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…	2033	2034	2035
중소기업	8	9	10	…	15	16	17
중견기업	10	10	11	…	14	15	16
대기업	7,086	7,299	7,518	…	9,246	9,524	9,809
계	7,105	7,318	7,538	…	9,275	9,554	9,842

자료: 한국산업은행,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투자는 신성장·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
-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(%): 대 15, 중견 15, 중소 25
- 신성장·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(%): 대 3, 중견 6, 중소 12

[표 13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: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…	2033	2034	2035
신성장·원천기술 세액공제율 기준(A)	1,513	1,558	…	1,862	1,918	1,976
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기준(B)	7,538	7,765	…	9,275	9,554	9,842
차이(B−A)	6,026	6,207	…	7,413	7,636	7,8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❑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1,658억원, 2035년 6,292억원 등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1년간 총 6조 6,933억원(연평균 6,08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개정안에 따라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,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10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11년간 총 8조 3,666억원 감소하나, 농어촌특별세 과세(1조 6,733억원)를 고려한 세수효과는 -6조 6,933억원

[표 1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5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(안 제24조)[1]	−11,658	−4,821	−4,965	−5,115	−5,268	−5,427	−5,590
−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	−11,658	−	−	−	−	−	−
−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	−	−4,821	−4,965	−5,115	−5,268	−5,427	−5,590

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(안 제24조)[1]	−5,758	−5,931	−6,109	−6,292	−66,933	−6,085
−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	−	−	−	−	−11,658	−11,658
−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	−5,758	−5,931	−6,109	−6,292	−55,275	−5,528

주: 제시된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